



##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미국

#### FTC, 건강팔찌의 실증되지 않은 표시 등에 대해 소추

FTC는 병의 완화효과를 표방하는 기만적 표시의 금지와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줄 것을 명하고 있다.

FTC는 일리노이즈 주에 본사를 둔 Q-Ray 이온팔찌(Q-Ray Ionized Bracelet. 이하 「Q-Ray 팔찌」라 한다)라고 하는 병을 완화하는 효과를 표방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허위 및 실증되지 않은 표시를 했다고 하여 소추했다. FTC는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해 일리노이즈 주 Elk Grove Village의 동일 소재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QT, Inc., Q-Ray, Company 및 Bio-Metal, Inc., 그리고 그 대표자인 Que Te Park과 Jung Joo Park이 Q-Ray 팔찌는 여러 가지 타입의 병에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점, 또한 Q-Ray 팔찌가 병을

완화하는 것은 시험으로 실증되고 있다는 점을 기만적으로 표시함으로써 FTC법에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FTC에 의하면 실제로는 플로리다 주 잭슨빌의 Mayo Clinic에 의한 최근의 연구에 의해 Q-Ray 팔찌에는 근육병 및 관절병의 완화에 관련해서 플라시보(placebo), 팔찌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것(즉, 심리적인 효과 외에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연방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해 긴급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긴급금지명령의 내용은 피고가 Q-Ray 팔찌에 관해 오인을 초래하거나 기만적인 어떠한 표시도 행하지 말 것과 더불어 피고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Q-Ray 팔찌는 알파벳 「C」 모양을 한 금속팔찌이고, 피고에 의하면 팔찌에 병을 완화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비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온화된」는 것이다. 피고는 그 상품을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30초간의 광고와 인터넷을 통해서 선전했다. 피고는 동 광고에 있어서 Q-Ray 팔찌가 신체의 양성(positive)에너지와

음성(negative)에너지를 전환하고 근골격병, 좌골신경병, 두통, 간염, 상처 등의 여러 가지 증상에서 온 병을 자연히 완화하도록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Ray 팔찌는 49.95 달러에서 249.95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피고는 no-risk의 환불보증에 대해서 광고하였다. 즉, 소비자는 Q-Ray 팔찌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FTC의 제소에 의하면 피고의 광고에서 약속돼 있는 30일 이내에 반품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바로 구입가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FTC에 의하면 실제로는 Q-Ray 팔찌에 불만을 가진 다수의 구입자가 피고에게 몇 번이고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광고를 보고 Q-Ray 팔찌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일부 구입자에게는 30일간의 환불보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FTC는 Q-Ray 팔찌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예비적 및 본안적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본 건 소송 제기에 대해서 FTC가 심의한 결과 5-0으로 승인되었다. 본 건 소송은 2003년 5월 27일 일리노이즈 북부지역 연방지방법원 동부지부에 제기되었다.

2003. 6. 2. 미법무부 발표문  
(「월간 공정취임」 2003년 6월호 참고)

## ■ 뇌물 받은 광고회사 이사에게 유죄 인정

맨하튼의 옥외광고회사 이사였던 자가 하청업체인 인쇄회사로부터 17만 6천 달러의 금전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연방법무부는 발표했다.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Transportation Displays Inc.의 부사장이었던 Barry Holland씨는 하청업체인 The Color Wheel Inc.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대가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한다.

Transportation Displays Inc.는 광고회사로서 2001년에 Viacom Outdoor Group Inc.의 계열사가 되었다. Holland씨는 처음에는 Transportation Displays Inc.에서 인쇄물을 구입했으며 후에는 Viacom Outdoor Group Inc.에서 인쇄물을

구입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방법무부는 기소장에서, Holland씨와 The Color Wheel Inc.와의 부패한 관계로 인해 다른 합법적인 사업자들은 Transportation Displays Inc.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관계로 인해 Holland씨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인쇄물을 납품 받아 왔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독점금지국이 광고시장이나 인쇄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들을 찾아내어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Griffin 부국장은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에는 The Color Wheel Inc.의 소유주였던 Haluk K. Ergulec씨에게 Holland씨의 범죄행위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7개월과 150만 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연방법무부는 광고 및 인쇄/그래픽 시장에서의 입찰담합, 사기 및 세금 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연방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독점금지국 뉴욕사무소가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여 조사를 벌였다.

2003. 7. 8. 연방법무부

## ■ 연방법무부, 전신 사기행위 기소

연방법무부는 미시간주에 있는 Livonia사의 대표가 사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전신을 이용한 금전 상납과 관련하여 같은 주에 있는 비디오 회사인 Troy사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Larry E. Bennett씨는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로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Premiere Video Inc.의 대표인 Bennett씨는 전신을 통하여 Troy사의 이사에게 금전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Troy사 이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Troy사와 Premiere사간의 비디오 테이프 복제 및 유통에 관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Premiere사가 유통업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가 자신의 하청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용역을 받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경쟁적인 가격책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James M. Griffin 독점금지국 부국장은 말했다.

전신 사기는 연방법 위반으로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이 범인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

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실 중의 하나가 법에 규정된 것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두 배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기소는 비디오복제산업에서의 반경쟁적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콜리브랜드 지방사무소가 FBI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해졌다.

2003. 7. 10. 연방법무부

## FTC, 보조금 알선회사의 사기행위자와 합의안 마련

연방거래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오레곤주의 Grant Search, Inc.와 미주리주의 Grant Pac, Inc. 및 이들의 대표들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기망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재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9만 6천 달러를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FTC는 이들을 지난 2002년 8월 "Operation No Credi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소한 바 있다. FTC는 피고인 Steven G. Levine, Sunday Levine, Scott Stettinichs, Grant Search, Inc. 및 Grant Pac, Inc.이 보조금 알선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선단체로부터 쉽게 보조금을 받

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우편이나 광고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광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TC는 피고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선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쉽게 보조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러한 단체들의 리스트와 어떠한 조건하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추가수수료를 내면 자신들이 자선단체들에게 제출할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에게는 예전의 단체 리스트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만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Operation No Credit"는 신용관련 사기행위들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집행 캠페인이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선불카드 사기 및 신용회복 사기를 포함하여 소비자들의 신용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기행위들이 포함된다.

소비자에 대한 환급 외에도,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오인을 유발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동의판결이 있었고, FTC의 통신 판매 규칙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특히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본질, 효율성 등에 대해 오

인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FTC와의 합의안에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비자 리스트를 판매, 리스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합의안에는 피고들로 하여금 동의판결 후 30일 이내에 29만 6천 달러를 FTC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합의안에는 FTC가 피고들의 합의내용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존하도록 했다.

2003. 7. 14. 연방거래위원회

## EU

### 위원회, 가스 및 증기 터빈 분야에서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지멘스사(Siemens AG)가 알스툼(Alstom)사의 소형 및 중형 가스 터빈과 산업용 증기 터빈 부문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러한 터빈들은 각종 계들을 작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유럽 내에서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5월말 지멘스는 이러한 내용의 기업결합계획을 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기업결합이 성사되더라도 알스툼은 대형 가스 터빈 부문은



계속 소유하며, 대형 스팀 터빈의 독립적인 공급자로서의 지위도 유지하게 된다.

위원회의 이번 시장조사는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 시장이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나아가 이에 의해 발생하는 동력의 정도에 기초해서 시장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가스 터빈 시장에서 지멘스는 현재 가스 터빈을 이용한 저출력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평적으로 의미있는 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경쟁사들 간 충분한 경쟁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증기 터빈과 관련해서는 알스툼이 현재 유럽 내에서 시장선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입찰 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획정하더라도 신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멘스와 알스툼의 결합을 통한 시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멘스는 독일 회사로서 정보통신, 자동화, 파워 제너레이션, 전동장치 및 관련 서비스, 운송, 조명 및 의료 기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알스툼은 프랑스 회사로

서 에너지, 전동장치, 선박건조 및 철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003. 7. 10. EU위원회

### 위원회, 코니카와 미놀타간의 합병 인정

EU위원회는 코니카사가 미놀타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회사들은 카메라, 사진복사기 및 기타 화상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주식취득 행위로 인해 전문 사진작가들이 빛의 노출 정도를 조정하는 도구인 사진노출계(photometer)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코니카사가 주식의 약 40% 정도를 사진노출계를 생산하는 일본의 세코닉(Sekonic)사에 매각하기로 함으로써 경쟁상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니카와 미놀타는 모두 카메라, 사진복사기 및 노출계 등을 포함한 장비 및 화상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사진노출계 분야에서의 코니카는 세코닉사에 대한 주주로 있다.

유럽 역내에서 중요한 사업활동을 벌이는 사업자들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통제규칙에 따라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 계획은 지난 5월말 위원회

에 신고되었다.

코니카와 미놀타의 영업활동은 사진복사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노출계 등 몇몇 상품시장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사진복사기와 카메라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결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분야에서의 시장선도자인 리코, 캐논(사진복사기) 및 올림푸스(카메라)와는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쟁상황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진노출계 시장에서는 결합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여져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코니카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도 해결되었다. 위원회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공조하여 이번 기업결합 사건을 조사했다.

2003. 7. 11. EU위원회

### 위원회, 통신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

7월 25일부터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위한 기본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편입이 이루어진다. 이를 10여일 앞두고, Liikanen과 Monti 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기본지침 제7조 하에서의 위원회의 감독권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본지침 제7조 하에서 회원국의 규제당국들이 의도하는 조치를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와 관련한 위원회의 준비작업이다. 동 워크샵에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줄 만한 관련 이해관계자들, 특히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규제당국에게 모두 개방되었다. 또한 오후에는 관계기관, 특히 회원국들의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관계장관들간의 특별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새로운 자문절차는 경쟁법과 개별산업규제법 중에서 장점만을 취한 것이다. 회원국의 규제당국은 전기통신 분야에서 광범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관된 태도로 효과적인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Liikanen과 Monti 위원은 말했다.

새로운 규제의 기본지침은 EU위원회로 하여금 제7조 메카니즘이라고 알려진 자문 및 투명성 절차에 따라서 회원국의 규제체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메카니즘은 회원국 규제당국이 자신이 의도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의 자문과 “유럽연합”의 자문에 다르도록 의무 지우는 것으로서, EU 전기통신시장의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EU위원회는 규제당국에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워크샵에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전기통신 분야에서 회원국내 규제당국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자문절차는 투명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는 새로운 체계를 EU 역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자문절차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는 모든 필요한 자원을 이 업무에 배정하고 있다. 이를 맡고 있는 팀들은 이미 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3월 7일에 EU 위원회와 의회는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규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2003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는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경쟁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일관성 있고 기술 중립적인 새로운 입법적 틀을 패키지 형식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전적 규제를 제한하고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규제절차 전체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03. 7. 14. EU위원회

## 일본

### 승합버스사업자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피의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동북지역에서 고속버스 노선을 공동운행하고 있는 승합버스사업자 3사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3사가 ① 신규참입자가 사업허가 신청을 한 때에 공동으로 신규참입자가 인가신청한 운임과 동등한 수준까지 운임을 인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곧바로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② 신규참입자로부터의 버스풀(철도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사용의 협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5월 14일 3사에 대해 아래 언급된 (1) 및 (2)처럼 독점금지법 위반에 관련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3사의 공동운행의 형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하 (1) 내지 (3)에 대해서 수단법인 일본버스협회에 회원사업자에게 주지하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버스풀의 관리자에 대해 버스풀 사용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1) 공동운행을 하는 사업자 이외에 고속버스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노



선에 있어서 공동운행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신규참입자에 대응하는 행위는 신규참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게 되는 경우 사적독점으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독점금지법 제3조)가 된다는 점

(2)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규참입자에 의한 버스풀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5항)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독점금지법 제19조)가 된다는 점

(3) 경쟁사업자의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는 공동운행에 있어서 운임제한을 수반하는 운임풀을 행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제한으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점

더욱이 국토교통성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승합버스의 사업허가 심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지적했다.

#### 〈공정취인위원회의 향후 대응〉

(1) 공동운행에 있어서 사업자간 운임·요금, 운행횟수 및 운행계통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에 해당하고, 독점금지법상 문제(독점금지법 제3조)가 된다는 것이다.

당 위원회는 1997년 도로운송법에 따라 적용제외 카르텔의 범위가 축소되었을 때, 도로운송법 제19조제1항

의 협정인가를 받아 행해진 버스 공동운행에 대한 당시의 제도, 실태에 근거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동운행에서 운임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나 사업시설 등의 관계로 초기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단독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점 등(예를 들면, 본 건 고속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에 의해 사업자가 단독으로 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행해진 협정은 노선분할, 시장분할을 하는 협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2002년 2월에 시행된 도로운송법 개정에 의한 규제완화에 따라 노선 개설후에 신규참입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쟁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997년의 견해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 위원회는 본 건을 근거로 하여 이후에도 규제개혁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고속버스 노선에서 신규참입이 원활히 행해지고, 고속버스 사업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의 공동운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엄정히 대처함과 아울러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03. 5. 14. 공정취인위원회  
(「월간 공정취인」 2003년 6월호 참고)

## 독점금지법연구회, 독과점 규제 재검토

독점금지법연구회는 지난 6월 25일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과점 규제 문제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독과점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규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독점상태가 왜 나쁜 것인지, 또한 어떠한 근거로 독점적 상태를 규제하는지와 관련하여 현재의 산업조직론으로 일차된 견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 후에 독점적 상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토의 대상

- 독점적 지위의 형성과정은 독점적 시장에 대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병목(bottleneck)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법상 규제가 없는 부문의 독점에 대해서도 검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보통법에 대해

- 필수설비이론은 시장지배적지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사업 분야에서의 보틀넥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필수설비이론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네트워크 외부성 문제와 보틀넥 문제는 엄격하게 구별하여 논의를 해야 한다.
- 보틀넥 독점에 수반되는 경쟁제한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제한행위의 배제뿐만 아니라 이보다 진일보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전국 균등 서비스)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구조분리까지 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보틀넥 독점에 관해서는 독점금지법상 위법이라고 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로 대응하는 외에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사업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제정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틀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사적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 독점상태에 대한 조치규정을 재검토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점적 시장구조에 기인한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 사적독점 규정으로 대응 가능한 것은 사적독점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경쟁의 폐해가 적어서 사적독점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독과점 시장구조에 기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규정을 검토함에 있어 특정 업종에 있어서 필수설비이론이나 지렛대에 의한 독점력 전이 이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이와 함께 연구회에서는 동조적 가격인상에 대한 규정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조적 가격인상에 대한 규제는 현재도 일정한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03. 7. 1. 공정거래위원회

### 일본, EU와 독점금지협력협정에 서명

일본과 유럽연합간의 독점금지협력협정에 관한 정식 서명이 지난 7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유럽연합 일본정부 대표부 특명 전권대사와 EU 상주대표 및 EU위원회 경쟁 총국장 사이에서 행해졌다. 이 서명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바야시 아쓰시 위원이 동석했다.

이 협정은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공정거래에 관한 국제적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당사자 경쟁당국간의 통보, 협력, 조정, 집행활동의 요청 및 중요한 이익의 고려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자기의 집행활동이 상대측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고(예를 들어, EU 당국이 일본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경쟁당국간 정보제공 등의 지원활동을 하며, 일·EU 경쟁당국이 관련 사건에서 집행활동을 하는 경우 집행활동의 효율화 및 조치에 있어서 모순을 피하기 위한 조정을 한다. 또한 상대측의 역내에서 행해진 반경쟁적 행위가 자기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측의 경쟁당국에 대해 집행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쟁당국이 집행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을 고려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지난 2000년 6월에 EU와의 교섭을 개시하여 같은 해 7월에 당사국간의 교섭단 간에 실질적 요소에 대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초안에 관한 협의를 하고, 2002년 6월 11일 가서명을 한 후 이번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은 규정에 따라 체결일의 30일 후인 2003년 8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일·EU 당국간 협력관계의 발전, EU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둘러싼 마찰의 회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9년 10월에 미국과의 사이에도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캐나다와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3. 7. 10. 공정거래위원회

## 캐나다

### 경쟁국, 정부의 경쟁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캐나다 정부는 허위 또는 오인유발적 표시에 의한 소비자 손실과 관련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새로이 수정 제의된 경쟁법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상회복은 민사절차에 있어서 구제를 강화할 것이며, 시장에서의 허위의 표시를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Allan Rock 산업부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한 허위나 오인유발적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은 경쟁법에 의해 자신의 피해액을 반환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의 산업, 과학 및 기술 위원회에서 2002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답변의 차원에서, 현재의 캐나다 경쟁체계를 현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장관은 “반경쟁 행위는 캐나다 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유발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세계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여 경쟁법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청문회절차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슈에는 다음의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과징금 규정과 함께 민사소송, 원상회복 등 민사 규정의 강화
  - 담합관련 규정의 개정
  - 가격 규정의 개정
  - 캐나다 시장기능 조사
- 이에 따라 캐나다 경쟁국은 공공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3. 6. 23. 캐나다 경쟁국

## 영국

### 경쟁위원회, SAFEWAY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

경쟁위원회 Derek Morris 위원장은 Safeway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조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며 8월 12일까지는 종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의 강연에서 “경쟁위원회에서 Safeway의 기업결합 심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들 한다. 현재 정해진 기한 안에 심사를 완료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4개월 반 동안에 480여개의 점포들이 관련된 독립적인 4개의 사건을 다루어야 하며, 해당 지방에서의 경쟁상황을 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

리는 현재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Safeway는 대규모 소매업자로서 동종의 사업자인 ASDA, TESCO, MORRISON 및 J SAINSBURY사와 각각 기업결합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쟁위원회에서 현재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경쟁법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Morris 위원장은 경쟁위원회에 새로운 의무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법(the Enterprise Act)에 의해 새로운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이동전화와 관련하여 경쟁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인 검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일이다. 우리는 책임있는 주체이며, 우리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2003. 7. 8. 경쟁위원회

## 호주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와 공정취인위원회, 경쟁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에 관한 협의를 개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경쟁분야에 관한 호주·일본간 정식 협력협정 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

Allan Fels ACCC 위원장과 竹島一彦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이에 행해진 최근의 회의는 매우 적극적인 것이고, 또한 국제적인 맥락에서의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 협력과 조정의 강화가 가져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 당국의 담당관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협력협정의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쟁분야에 관한 협력협정의 제안은 경제적 제휴의 심화를 위해 호주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협의의 일환이다.

2003. 5. 14.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년 6월호 참고)